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2.4.1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4월 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4월 1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영남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. 1. 17. (법률 제11175호)로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14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

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회로 하되,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,

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항목을 신설함.

- (2) 부칙 안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안제2조에서는 안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 마저 빼앗는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위협에 대응하고,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되어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,

같은 법 같은 조의2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서, 우리 구 조례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「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